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375호)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
시행 공모 안내서**

공고 대상

**범부처 합동 AX-SPRINT 사업 內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분야(13개 과제 내외)**

2026. 3. 19.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목 차

I.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 시행 공고	
1. 공모 대상	2
2. 일반 및 유의사항	6
II.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작성	
1. 신청서류 접수일정 및 방법	10
2.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11
3. 기타	13
III.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15
2. 평가항목 및 배점	16
3. 평가점수 산정방법	17
IV. 사업비 계상기준	
1. 사업비 지원·부담 기준	19
2. 사업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19
3.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	19
4.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22
5. 기타	22
V. 신청 관련 Q&A	24
VI. 후속 지원사업 안내	27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28
[부록1] 혁신조달사업 개요(안)	29
[부록2]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개요(안)	31

I.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 시행 공고

1. 공모 대상

가.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 개요

○ 사업 개요

- (배경)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내 산학연 역량을 총집결하여 쏠산업에 신속히 AX를 장착하기 위한 범부처 AX-Sprint 사업 추진
- (목적) 국토교통산업 AI 고도화, 신시장 창출 및 국민체감도 확산 등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국토·교통 분야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상용화 지원
- (지원분야) 국토교통 분야(도로 및 모빌리티 분야 제외)

○ 사업 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총 370.5억원(과제당 28.5억원 내외, 13개 과제 내외) 중 '26년 정부지원금 299.25억원
 - (타입1, Agile 트랙) '26년 정부지원금 228억원 내외(28.5억원 내외 x 8개 내외)
 - (타입2, Build-up 트랙) '26년 정부지원금 71.25억원 내외(14.25억원 내외x 5개 내외)
- ※ 정부지원금, 지원 과제 수 등 지원규모는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26 ~ '27
 - (타입1, Agile 트랙) '26.6월 ~ '27.5월(예정, 협약일로부터 1년)
 - (타입2, Build-up 트랙) (1차년도) '26.6월~'27.5월(예정, 협약일로부터 1년), (2차년도) '27.6월~'27.12월(예정)

나. 사업 내용

○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수행 형태	사업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AI 서비스 탑재 및 AI 모델 고도화 등 ▶ AI 응용제품의 성능·신뢰성 평가를 위한 대규모 실증 및 양산체계 구축·개선 ▶ 제품 인증획득 및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 투자유치, 국내외 시장진출* 등 	단독 또는 컨소시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총 사업비의 70% 이내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30% 이상 ※ 주관기관이 총 사업비의 50% 이상 사용하도록 사업비 편성

* 전담기관의 발주처 연계, 국내외 시장진출 및 투자자 연계, 범부처 공동전시 참가 등 홍보·마케팅, 기술가치평가 등 다양한 사업화 연계 활동 적극 지원

○ 지원 유형

구분	대상 품목	기술 성숙도
타입1/ Agile 트랙 (1년, 8개 내외)	▶ 시제품 완성 단계의 AI 응용 제품·서비스로, 1년 내에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고 시장에 빠르게 침투 가능한 품목	TRL 8 이상
타입2/ Build-up 트랙 (2년 이내, 5개 내외)	▶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발전여지가 높은 AI 응용 제품·서비스로, 국민활용도와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 지원 분야 (지원분야 내 자유공모)

지원분야		세부 설명
국토	국토지능화·도시공간정보, 건축·주거 환경	· 다양한 센서 정보를 AI와 융합하여 디지털트윈 국토를 구현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확산과 도시계획의 지능화 지원, 건축물 에너지 관리 등 정보화를 통해 국민 체감형 생활환경 고도화를 실현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 등
	시설물 설계·해석 및 안전·유지관리	· 건축정보모델링 기반 설계 자동화 및 구조 해석을 지원하고, IoT 센싱과 AI를 활용하여 공동구 등 주요 SOC 시설물의 결함을 선제적으로 예측·진단하며, 생애주기 유지관리 최적화를 통해 시설물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및 서비스 등
	건설시공 및 재료	· 로봇 등을 활용한 건설공정 자동화 및 무인 원격 시공을 구현하고, AI 영상분석 기반 건설현장 안전 통합 관제로 재해율을 저감하며, 콘크리트 등 건설 재료의 성능·품질 분석 및 친환경 신소재 적용을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기술 및 서비스 등
교통	철도	· 철도 차량·궤도·신호·전력 등 핵심 설비의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고장 징후를 사전 검지하는 상태기반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열차 운행 계획 최적화·역사 내 이용자 안전 확보 등 운영 전반의 지능화를 통해 철도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및 서비스 등
	항공 및 물류	· AI 기반 원격관제 및 첨단 항행안전시스템 고도화로 항공 교통 안전성과 공항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도심항공 교통(U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에 대응한 무인기 교통 관리체계 관련 기술·서비스 등 · 로봇·드론 등 차세대 물류 수단 상용화와 물류 운송·보관·하역 전 과정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공급망 가시성 확보 및 물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및 서비스 등

※ 지원분야의 세부설명은 예시이며 국토·교통 분야 내 자유공모 사업임. 단, 도로 및 모빌리티 분야는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으로 지원(전담기관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상세 지원 범위(안)

지원범위		세부 설명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패키지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제품 제작, 기능 고도화 및 최적화 개선, 서버 임대 및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독 등
	양산체계 구축 지원	· 양산 공정 최적화 설계, 품질관리시스템 및 기술유출방지 체계 수립 컨설팅 지원 등
	기술이전 및 지재산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AI 모델 확보	· 학습데이터 확보 및 AI 모델 최적화 지원, GPU 활용 및 임대
	시험 인증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 인증 취득, 해외 인증·시험·평가 비용 지원
	실증 지원	· 테스트베드 구축, 사용자 피드백 점검, 실환경 테스트 및 성능검증 효과분석
	보안성 검토 지원	·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관련 컨설팅 지원
판로 개척	BM 개발	· 타겟분석, 가격전략(경제성, 수익성 분석), 시장진출 전략 수립 등
	전시회 참가 및 투자유치	· 국내 AX-Sprint 공동 전시회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비즈니스 매칭 지원 등
	홍보지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 홍보
	패키징 및 브랜딩 지원	· 제품 디자인 및 브랜드 로고 개발 지원

다. 지원대상 및 참여제한

○ 지원 대상

- 국토교통 분야의 AI 제품·서비스를 영위하는 단독 기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기관) 영리기업(중소/중견/대기업)
 -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용어 정의

- **주관기관** : 지원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과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기업
- **참여기관** :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과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기관
- **과제책임자** : 지원과제를 총괄하는 주관기관의 과제수행자
 - ※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 외 모든 참여인력은 과제수행자임



※ 참여기관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수행기관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 명확성 등 고려하여 과다편성 지양

- **참여 제한** : 다음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실상 동일한 제품·서비스로 여러 부처에 중복 신청하거나, 컨소시엄 주관기관이 여러 부처에 주관기관으로서 중복 신청할 경우
 -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 선정 전 10개 부처 간 확인 예정
 -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 수행 중인 기술(서비스)로 신청한 경우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 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및 보조금법에 따라 수행 대상에 배제되거나 교부 제한받은 중인 경우
 - 상용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과제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

2. 일반 및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지원과제의 주요 지원내용, 지원기간 및 사업비는 공모 안내서 및 사업 관리지침 등을 참조하여 작성
 - 지원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세부 사업 계획 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명확한 사유와 근거 제시 필요
 - ※ 지원내용,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금 등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및 과제 특성을 반영한 고유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하되 상용화 성과(사업화, 매출액, 국민체감도, 사업화 노력 및 확산 노력) 목표 중 사업화 또는 매출액 중 1개 지표는 반영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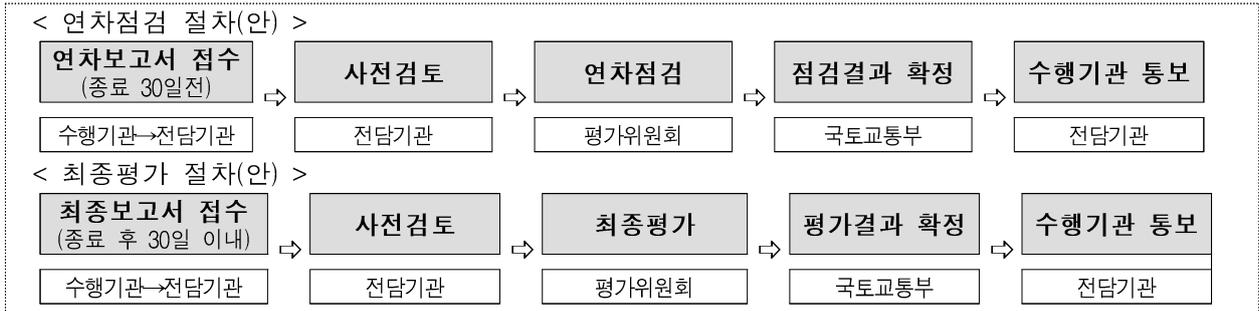
- 예시1) 사업화: 제품 출시 ○건 달성, 계약 ○건, 조달등록 ○건
- 예시2) 매출액 : 매출액 ○천원 달성
- 예시3) 국민체감도 : 이용자 만족도 ○% 달성, 상용화 제품(서비스) ○명 이용
- 예시4) 사업화 노력 : 양해각서, 구매확약서, 구매의향서 등 확보 ○건
- 예시5) 확산 노력 : 투자유치 및 시장개척을 위한 행사, 전시 참여 ○건, 투자유치 ○건

- 본 공고 관련 일반사항은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이하 '관리지침')을 따르며,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연구개발 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등을 따름
- 상기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나. 유의사항

- 본 사업 내 타입2(Build-up 트랙)에 해당하는 5개 지원과제는 총 지원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며, 연차점검을 원칙으로 함
 - 타입1/Agile 트랙(12개월, 2,850백만원 내외) : '26년 6월 ~ '27년 5월
 - 타입2/Build-up 트랙 1차년도(12개월, 1,425백만원 내외) : '26년 6월 ~ '27년 5월
2차년도(7개월, 1,425백만원 내외) : '27년 6월 ~ '27년 12월

※ <참고> 연차점검 및 최종평가 절차



- **수행기관**은 지원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이상**의 비용을 부담
 - 신청과제별 총 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하며, 컨소시엄 내 기관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부담비율은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
 - 민간부담금의 현금부담 비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해당 금액은 연도별 **협약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담 완료 필요 (중소 10% 이상, 중견 13% 이상, 대기업 15% 이상)
- **주관기관**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사용하도록 사업비 편성 필요
- 과제수행자별 해당과제 참여율과 타 정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 이내**가 되도록 참여율 산정하고, **과제책임자**의 경우 참여율은 **30% 이상** 필수
- 원 수행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 인건비는 현물만 계상 가능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수행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관리지침 별표1 참조)
 - 지원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과제수행자**(신규 채용 과제수행자는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채용한 과제수행자도 인정. 단, 민간부담금 현금 범위 내 금액 인정)
 - **AI·IT** 기술개발, 분석 등 지원과제의 목적 수행에 직접 투입되는 **기술 인력**으로 참여하는 **과제수행자**
- 영리기업인 수행기관은 연차별로 **정부지원금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을 가입** 하고 **협약시 및 연차별 정부지원금 지급 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 본 공모 안내서의 “IV.사업비 계상기준, 4.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참고

- 보험기간은 각 연차시작일~해당 연차종료일+6개월이며, 이행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수행기관 자체 부담(사업비 계상 불가)
- 사업계획서에 신청과제 내 AI 기술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과제 수행으로 생성된 AI 학습데이터 일부를 AI 허브(aihub.or.kr)에 개방·공유하도록 노력 필요
- AI 솔루션 개발 추진 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한국어 처리 능력, 보안성 및 정보 보호 역량, 신속한 유지보수 역량 등 지속적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AI 모델 활용 권고
- 개발되는 AI 솔루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NPU 활용 권고
-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홍보 등을 위해 추진하는 범부처 공동 전시회, 전담기관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전시참가, 발주처 연계 및 투자상담회 등 참여를 위해 **홍보비 등 제반비용(1억원 이상)**을 사업계획서 작성 시 **편성** 필요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이 추진하는 성과 전시, 발주처 연계, 기술가치평가 및 사업화 연계 등 성과 확산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 필요
- 수행기관은 사업비 정산을 위해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한 위탁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위탁정산 수수료**를 사업계획서 작성 시 **편성** 필요
- 정산 수수료는 총 사업비의 약 0.3% 수준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최종 수수료는 추후 위탁정산기관 선정 이후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
- 운영위원회 심의, 정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최종 사업비, 지원 세부 내역 등은 조정 가능
- 지원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은 수행기관의 소유로 하며, 협약기간 이후에도 적정하게 유지·관리 필요
- 수행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3년간 지원과제와 관련한 발생 성과(성과 활용보고서) 제출 필요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협약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시스템을 통해 제출 필요

Ⅱ.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작성

1. 신청서류 접수일정 및 방법

가. 접수일정

공고기간	인터넷(전산) 입력 및 신청서류 접수
'26.03.19(목)~'26.04.20(월) 18:00까지 (32일)	'26.04.06(월)~'26.04.20(월) 18:00까지 (14일)

나. 사업설명회 일시/장소

- 일시 : '26.3.31(화) 14:00~16:00(예정)
- 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층 대강당
 - ※ '26.03.26(목)까지 아래 링크에서 참석 신청한 신청자에 한하여 참석 가능하며, 참석인원은 기관당 1명으로 제한
 - ※ 참석 신청 링크 :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다. 인터넷(전산) 입력 안내

-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hub.kaia.re.kr)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 업로드
- 인터넷 입력 마감일 18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되므로, 종료 전 제출 완료 필요
 - ※ 기한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

라. 문의처

- 공고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기업성장지원실
김은혜 선임연구원(031-389-6537, bizhub@kaia.re.kr)
 - ※ 문의 전 공모안내서와 Q&A 확인 후 이메일 문의 요망(공고기간 유선문의 폭주 예상)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2.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관리지침 제10조제1항)

연번	항목	필수 여부	비고
1	신청 공문(신청 기관(주관기관)장 직인 날인, 문서24 등을 통해 전자공문으로 제출) ※ 문서24 사용방법은 참고1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참고	필수	참고1
2	사업계획서(신청 기관(주관기관)장 직인 및 과제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서식1
3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서식2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필수	서식3
5	자체 중복성 검토의견서	필수	서식4
6	제품·설비 구축 계획서(3천만원 초과 대상)	해당시	서식5
7	가점사항 확인서(증빙서류 포함)	해당시	서식6
8	신청과제 관련 국토교통기술 및 AI기술 보유 증빙서류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등 ** AI 기술인력(전공, 경력 등), 특허·논문, 공인인증, 유사 매출실적·사업실적 보유	필수	
9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기관별)	필수	
10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 ※ 중소기업부·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중견기업 확인서: 중견기업정보마당(https://www.mme.or.kr/)	필수 (기업)	
11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받아 제출	필수 (기업)	
12	고용증빙(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기관별)	필수	
13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기관별)	필수	

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절차



다. 신청서류 접수

- 신청공문은 가능한 전자공문*으로 접수하며, 마감시간('26.04.20(월) 18:00) 이내 제출 필수

* (전자공문 사용방법) [참고1] 문서24(<https://docu.gdoc.go.kr/index.do>)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참고

- 신청서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hub.kaia.re.kr)에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ID로 접속하여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업로드

※ 과제책임자 제출 마감 이후 신규 접수는 절대 불가

라. 신청서류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및 제출자료 양식은 공고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서식1]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70쪽* 이내로 작성 필수 (초과되는 분량(71쪽 이후)은 선정평가 자료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 요약문부터 쪽수에 포함(첫 페이지는 표지로 쪽수에 미포함)

- 사업계획서 및 제출자료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지원사업 신규참여 제한 등 불이익 조치

마. 신청서류 검토 및 처리(관리지침 제12조 참고)

-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탈락 조치
 -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류 검토결과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1회에 한함), 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탈락 조치

3. 기타

- 마감시간에 임박해서는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이전 접수 완료 권장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체 미반환
-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
- 신청 사업비는 사업비 계상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협약 사업비는 평가위원회 적정성 검토와 운영위원회 조정을 통해 조정 가능

Ⅲ.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절차	방법 및 내용	일정
시행 공고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기관(진흥원) : 진흥원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를 통해 시행 공고 및 접수 • 주관기관 : 사업확서 등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26.03.19 ~ '26.04.20 18:00
↓		
사전검토 (신청서류 검토·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기관(진흥원) : 신청서류 검토*(필요시 보완 요청)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신청기관 자격요건 및 지원 제외대상 여부, 지원 분야 사업 계획 등 지원 내용의 일치 여부 등 • 주관기관 : 신청서류 보완(전담기관 요청시) 	'26.04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 결과 “적합” 확인 과제 대상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 70점 이상 신청과제 중 지원규모 3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 	'26.05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평가 통과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 종합평가점수(70점 이상 과제에 가점 반영)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선정심의 대상과제 선정 ※ (유의사항) 발표자료는 신청서류 접수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발표(PPT 등 별도자료 사용 불가) 	'26.05
↓		
최종선정 심의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우선순위와 사업비 조정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최종 선정 심의 - 지원규모 1배수로 “지원대상” 과제 선정(차순위는 “지원후보”) 	'26.05~06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선정심의 결과 국토부 보고 및 확정 • 주관기관에 선정평가 결과 통보 • 선정기관과 전담기관간 협약체결 	'26.06

※ 신청서류 접수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항목 및 배점

- (서면평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과제 중 지원규모 3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사업 적격성	단기 상용화 가능성	사업기간 내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10
	국민 체감 효과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통한 국토교통 시 전환에 대한 국민 체감 효과	10
기술성	기술 수준	시 기술 및 제품·서비스의 기술 성능 및 상용화 준비 수준	10
시장성	시장점유 가능성	상용화 제품·서비스의 국내·외 시장 존재 및 점유 가능성	10
	시장확장 가능성	상용화 이후 조달 및 수요처 추가 확보 등 지속 성장 가능성	10
상용화 계획성	추진계획 타당성	상용화를 위한 계획의 적절성 및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15
	추진계획 합리성	인력, 예산 등 자원배분 및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	10
사업 수행역량	인력 및 인프라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및 보유 인프라,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등 역량	10
사회적 가치창출	사회적 환원 및 기여	사회적 환원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5
재무역량	재무 안전성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 안정성	10

- (발표평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70점 이상 과제에 가점을 반영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서면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점수에 미반영)

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사업 적격성	단기 상용화 가능성	사업기간 내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5
	국민 체감 효과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통한 국토교통 시 전환에 대한 국민 체감 효과	5
기술성	기술 수준	시 기술 및 제품·서비스의 기술 성능 및 상용화 준비 수준	10
시장성	시장점유 가능성	상용화 제품·서비스의 국내·외 시장 존재 및 점유 가능성	10
	시장확장 가능성	상용화 이후 조달 및 수요처 추가 확보 등 지속 성장 가능성	10
상용화 계획성	추진계획 타당성	상용화를 위한 계획의 적절성 및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상용화 또는 매출 지표 등 (핵심성과) 목표 설정의 적절성	15
	추진계획 합리성	인력, 예산 등 자원배분 및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	10
사업 수행역량	인력 및 인프라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및 보유 인프라,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등 역량	15
사회적 가치창출	사회적 환원 및 기여	사회적 환원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5
파급효과	기대효과	정량적 기대효과(매출, 고용, 시장창출, 수출 등)	10
	파급효과	정책기여 및 확산 가능성	5

- (현장점검, 필요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확인을 위해 필요시 실시
- (최종선정 심의) 발표평가를 통해 산출된 종합평가점수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원대상과제 선정

3. 평가점수 산정방법

- (산정방식) 평가위원회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탈락사항)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조치
 - 발표평가 당일 특별한 사유없이 주관기관 과제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은 경우 '탈락' 조치
 - ※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등 불가항력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사전 승인 필요)에 한하여 예외 인정(해당 시 진흥원과 사전에 별도 협의 요망)
- (가점 반영) 관리지침 제14조(발표평가) 및 별표3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가점은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증빙)와 이에 대해 진흥원에서 요청한 보완사항을 보완한 자료를 근거로 발표평가 점수에 합산하되, 70점 미만인 과제에는 미부여
 - 신청기관은 가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6] 가점사항 확인서에 따라 해당 목록과 증빙서류 제출(가점 적용기준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

< 가점 기준 >

구분	항목	가점	최대 인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서 정의하는 전문투자자, 정부에서 출자한 모태펀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벤처투자회사 등'으로부터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민간재난접벤처투자조합' 포함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만 인정	2	3
2	지원과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요처가 2개 이상일 경우 ※ 수요처 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문서(공문, 약속서 등)만 인정	1	
3	[국토교통부] 건설·교통·물류 신기술 인증 기업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른 우수 물류 신기술 중 1개 이상을 받은 기업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신청한 지원과제와 관련된 기술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만 인정	1	2
4	[정부] 국토부부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등급 이상인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신청한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술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만 인정	1	

- (최종선정심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평가점수(발표평가점수에 가점 반영)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원대상 13개 내외 과제 선정

IV. 사업비 계상기준

1. 사업비 지원·부담 기준

- 수행기관은 지원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이상**의 비용을 부담
 - 신청과제별 총 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하며, 컨소시엄 내 기관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부담비율은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
 - 민간부담금의 현금부담 비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해당 금액은 연도별 협약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담 완료 필요 (중소 10% 이상, 중견 13% 이상, 대기업 15% 이상)
 -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민간부담금의 사용 용도는 **인건비, 보유 기자재, 재료비에 한함**

2. 사업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 과제당 사업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관리지침과 수행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과제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소요액으로 사업비 계상 필요
- 각 수행기관은 자체 규정 마련 및 유지 필요

3.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

- 사업비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은 관리지침 별표1의 사업비 계상·사용 및 정산기준을 따름

< 사업비 계상기준 >

구분			사용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용도		
인건비 (110)	보수 (01)	내부 인건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수행기관 소속 참여인력(해당 수행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1.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을 해당 사업참여율에 따라 계상 - 과제수행자별 해당과제 참여율과 타 정부 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 이내가 되도록 참여율 산정 * 참여율은 과제책임자의 경우 30% 이상 * 4대보험과 퇴직급여총당금의 본인·기관부담금 포함

구분			사용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용도		
				<p align="center"><세부 산정기준></p> <p align="center">수행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 참여기간(월)</p> <p>* 해당기관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 사업수행자가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p> <p>2. 원 수행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 현물만 계상 가능(현금 미지급 원칙)</p> <p>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 가능</p> <p>가. 지원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과제수행자(신규 채용 과제수행자는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채용한 과제수행자도 인정)의 인건비 중 민간부담금 현금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p> <p>나. AI·IT 기술개발, 분석 등 지원과제의 목적 수행에 직접 투입되는 기술인력의 인건비</p> <p>* 핵심목표(AI·IT 분야 개발)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개발·분석을 수행하는 과제수행자이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해당 과제수행자의 역할, 투입기간, 참여율 및 산출물(모델·알고리즘·소프트웨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계상 가능</p> <p>4.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최대 30%까지만 계상 가능</p>
운영비 (210)	시험 연구비 (13)	인·검증비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기술·제품의 우수성 등에 대한 인·검증 비용(신청 평가 수수료 포함)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 분석·의뢰비용, 수수료, 관납료 등 - 외부기관 대행비용 계상 가능
		시험 분석비	○ 인·검증, 시험·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분석 비용	- 기술 컨설팅 비용과 혼용하여 계상 불가 ※ 컨설팅 비용은 일반 용역비로 계상
	임차료 (07)	기자재 및 시설 임차비	○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시제품 제작, 현장 테스트 등에 필요한 장비·시설의 협약기간 내 임차에 관한 경비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 보유 기자재(장비, SW 및 HW) 장비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 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
			○ 해당사업을 위해 필요한 GPU등을 임대하는 비용(클라우드 서비스)	
	재료비 (11)	성능분석 재료비	○ 제품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시약 재료 구입비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 노무비는 해당 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한정
		설비 제작비	○ 제품·설비 제작 경비 (자체 제작하는 경우 외부 노무비 포함)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현금 계상 가능
		데이터 구축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구축비	
일반 수용비 (01)	홍보비	○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물, 온·오프라인 매체광고, 전시회 참가 등 사업 관련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개선 - 제품 카달로그·브로슈어·포스터 및 모형* 제작 * 전시회 등 참가시 활용되는 시제품 모형 제작 - 온·오프라인 광고 - 세미나·전시회 개최 및 참가비(다만, 세미나·전시회 중 세미나는 개최비만 계상 가능)	

구분			사용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용도		
		위탁정산 수수료	○ 지원과제 사업비 정산 수수료 - 사업비 집행실적 검증을 위한 회계법인 납부 검증수수료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 별도 공지되는 회계법인 정산수수료 계상 * 회계법인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며, 수행기관이 선택할 수 없음 - 보증보험 수수료 계상 불가
		조달 수수료	○ 조달 수수료 -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납부하는 조달 수수료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활용비 - 해당과제 관련하여 상용화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자문비 등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일반 용역비 (14)	위탁 사업비	○ 사업비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계약 체결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한 이후 수행 결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비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1.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상용화 전략,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자금 유치, 기술이전지도, 보안성컨설팅 등 해당 지원과제와 관련된 분야로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가능 2. 시설 구축 공사 비용 등 포함
여비 (220)	국내 여비 (01)	국내 출장비	○ 과제수행자의 국내 출장여비	1. 수행기관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국외 여비 (02)	국외 출장비	○ 과제수행자의 국외 출장여비 (체제비 포함)	*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본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은 계상 불가능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시스템 구축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구입비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무형 자산 (440)	무형 자산 (01)	IP획득 지원비	○ 해당 지원과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의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에 필요한 비용(관납료 등)	1.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총 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특성상 불가피하게 사업비 계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처리 가능

※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인건비, 보유 기자재, 재료비로만 계상할 수 있음

4.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 (개요) 사업비 부당집행액에 대한 회수율 제고를 위해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대상기관) 정부지원금을 받는 **영리기업인 수행기관**
- (보험가입액) 각 기관에 지원되는 **연차별 정부지원금 전액**
※ 보험가입액 세부사항은 협약시 별도 안내 예정
- (보험기간) 각 **연차시작일~해당 연차종료일 + 6개월 가산**
※ 사업비 정산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가산
- (보험료) 수행기관 자체 부담(**사업비 계상 불가**)
- (제출방법) 주관기관이 컨소시엄 내 모든 대상기관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취합하여 협약서류와 함께 진흥원에 제출(협약시 제출)**

5. 기타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지침,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혁신법 관련 행정규칙, 운영규정, 연구개발 관리지침 등에 따름
- 상기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V. 신청 관련 Q&A

[Q1] 본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했던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하였는데 제출한 기술이 공고에 반영되거나 선정평가지 별도 가점이 있는지?

[A1] 사전 수요조사는 사업 추진 필요 여부 및 분야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접수된 기술이 공고에 반영되거나 선정평가지 별도 가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Q2] 중소기업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A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타 서류 불인정).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한국중견기업협회(<https://www.mme.or.kr>)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타 서류 불인정)

[Q3] 정부지원금에 대한 상환이나 기술료 납부 의무가 있는가?

[A3] 본 지원사업은 비R&D 사업으로 정부지원금에 대한 상환과 기술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규정(관리지침 제40조 참조)에 따라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학회 또는 협회를 참여기관으로 구성 가능한가?

[A4] 지원대상에 해당하고 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Q5] 신청서류 접수 이후에 사업계획서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A5] 신청서류 접수 마감 이후에는 임의로 수정·보완을 하실 수 없으며, 접수시 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만 보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자의 보완요청사항 및 단순 오류의 정정사항 이외에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실 경우, 관리지침 제 50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6] 회계법인 위탁정산 수수료는 어느 항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6] 위탁 정산 수수료는 운영비 내 일반수용비에 계상 가능하며, 총 사업비 규모의 0.3% 내외로 수수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실제 위탁정산 수수료 (비율)는 추후 위탁정산기관 선정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Q7] 가점 및 감점에서 예를 들어 최근 3년 이내의 경우 기준이 되는 일자는?

[A7] 가점 및 감점 적용 기준일은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6.04.20이 신청 마감일인 경우 최근 3년 이내는 '23.04.21~ '26.04.20(신청 마감일)까지가 해당됩니다.

[Q8] 가점기준이 적용되는, 과제를 신청하는 기업 및 신청인은?

[A8] 지원과제를 총괄하는 주관기관 및 해당 기관의 과제책임자만 해당됩니다.

VI. 후속 지원사업 안내

1. 혁신조달사업 조달청

※ 부록1 참고

AX_SPRINT 성과물 중 공공성·혁신성을 갖춘 제품의 경우 혁신제품 유형2 (조달청지정) 'AI제품 평가트랙'을 통해 혁신제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및 **시범구매 대상**이 되며, 공공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제27조)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혁신제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혁신제품 지정관련 문의	조달청 혁신조달정책과	042-724-7664, 7420, 7217
혁신제품 신청관련 문의	(재)한국조달연구원 혁신제품지원센터	02-6951-4976, 5474, 5143, 4579

2.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중기부

※ 부록2 참고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은 산업 현장에 AI를 접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혁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X-SPRINT 선정기업 또는 AI 관련분야 중소벤처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창업기반지원자금(업력 7년 미만) 및 혁신성장지원자금(7년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자금 우대금리 0.1%p 인하 및 최대 대출한도 우대(60→100%)하는 금융 혜택을 제공합니다.

※ 혁신성장분야 내 산업AI 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 : 3D직접회로, 전력반도체소자, 칩렛, 반도체 소재 등
- 인공지능 : 기계학습·딥러닝, 데이터시각화, AI 진단, 양자컴퓨팅, AI 휴머노이드 등

구분	항목	비고
서식1	사업계획서(신청용)	필수
서식2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서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필수
서식4	자체 중복성 검토의견서	필수
서식5	제품·설비 구축 계획서	해당시
서식6	가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참고1	문서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개인/대표/부서/업무)	전자공문 제출을 위한 문서24 사용시 참고
참고2	국토교통 R&D 유형별 기술성숙도	제품(서비스) 개발 수준(기술성숙도 (TRL)) 작성시 참고

1 공공혁신 조달사업

- (개념) 공공이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가 되어 초기시장을 창출하며, 기업의 혁신성장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

*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제품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며 초기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캐나다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19년에 도입

- (지정) ①기획재정부가 제도를 총괄하고, ②조달청, 중기부 등 18개 부처*가 혁신제품을 지정(지정기간 : 기본 3년 + 연장 3년)

< 혁신제품의 유형(25.12월말 기준) >

구분	절 차	지정(총 2,774개)
① 유형 I (각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 • 부처별 자체기술인증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 	1,815개
② 유형 II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 	959개

* (유형 1 지정부처) 과기부, 국방부, 행안부, 농림부, 산통부, 복지부, 기후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지재처, 우주청, 경찰청, 산림청, 기상청, 해경청, 소방청(17개 부처)

-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구매(제품당 3억원 한도), 혁신장터(플랫폼) 운영, 조달(수의)계약 대행서비스 등을 통해 혁신제품 확산 역할을 수행

2 혁신제품 구매 혜택

- (개요) 지정기간 내 수의계약 가능, 시범구매 지원(26년 839억원), 구매 면책 운영,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등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상 금액의 제한 없는 수의계약 대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 **(시범구매)** 조달청이 첫 구매자로서 자체 예산('26년 839억원)을 활용해 다양한 행정현장에 혁신제품의 사용·테스트를 위한 실증 기회 제공

* 시범구매 규모(억원) : ('19^{신설}) 24억원 → ('20) 293억원 → ('21) 445억원 → ('22) 465억원 → ('23) 483억원 → ('24) 530억원 → ('25) 529억원 → ('26) 839억원

○ 수요기관에는 혁신제품의 직접 사용 기회를 부여하고, 혁신기업을 위해서는 초기 판로 지원 및 현장 적용을 통한 성능 개선 유도

< 혁신제품 시범구매 절차 >



□ **(구매면책)** 구매담당자가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혁신제품 구매에 대한 구매면책을 규정함으로써 혁신제품 구매 지원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 **(구매목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관별 구매목표 설정하고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기관평가에 반영

○ '25년 기준 중앙부처 1.0%, 지자체 1.5%, 공공기관 1.7%, 지방공기업 1.2%

□ **(기타)** 혁신제품 플랫폼(혁신장터)을 통한 홍보, 전시회(나라장터 엑스포, 조달의날) 참여, 기타 타 부처 연계사업 지원 등

3 AX Sprint 사업과의 연계

□ **(혁신제품 연계)** AX_SPRINT 성과물 중 공공성·혁신성을 갖춘 제품의 경우 유형2(조달청지정) 'AI제품 평가트랙'을 통해 혁신제품으로 지정 가능

* AI제품 평가트랙 : 새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인공지능(AI) 혁신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AI제품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추가한 'AI제품 특화트랙 평가기준'을 신설('26.8월 시행)

** 혁신제품으로 지정시 시범구매를 통해 실수요기관 현장 적용 및 판로지원 가능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상세내용

□ 사업개요

-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AI) 접목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혁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지원

□ 지원대상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AI 및 AI 관련 분야 영위 또는 AI 도입·활용 중소벤처기업**

* '26년 중기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가 선정 예정

** <붙임> 혁신성장분야 내 산업AI 분야로 지정된 품목을 영위하거나 도입·활용하는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 **(지원자금)**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은 창업기반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지원

*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지원조건)** 창업기반지원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의 대출조건 따름

- **(우대사항)**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 (0.1%p 인하) 및 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60→100억원)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수시접수 및 정책우선도 평가 면제, 패스트트랙 적용

□ 기타사항

- 혁신성장지원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 자금 대출 가능

<붙임> 혁신성장분야 內 산업AI 분야

1. 반도체·디스플레이

분 야	품 목		
반도체	3D집적회로	전력반도체소자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장비	칩렛
	반도체 소재		

2. 인공지능

분 야	품 목		
AI 인프라 및 핵심모델	기계학습·딥러닝	지능형 상황진단 및 분석	멀티모달 모델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HMI)	AI칩	온디바이스 AI 기술
데이터 분석컴퓨팅	에지컴퓨팅	메모리중심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데이터시각화	시맨틱기술
	차세대 데이터저장	슈퍼컴퓨팅	양자컴퓨팅
AI 융합서비스	AI 진단	지능형교통체계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AI 분석 및 예측 솔루션	AI 휴머노이드	AI 기반 콘텐츠 개발
	AI 고객경험(CX)		